

의안번호	2207176
의 퇴 인	강명구 의원
회 답 일	2025.1.7.
추계번호	24C6463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6억 7,100만원(연평균 1억 3,400만원)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자립지원 실태조사 (안 제38조의2제1항)	-	218	222	-	231	671	134

주: 1. 2026년과 2029년은 현행법에 따라 2023년에 이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해로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

2.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8조제1항제5호 (자립지원)	○ 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-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(제5호 신설)	의무규정
2	안 제38조의2제1항 (자립지원 실태조사)	○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, 생활 및 정서적·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여야 함 ※ 기존 실태조사 실시 주기: 3년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38조제1항제5호 (자립지원)	X	·보건복지부는 “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자립지원 체계 구축” 사업을 통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전담인력 인건비와 사업비, 운영비를 지원하고, 해당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심리상담,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음(2024년 예산 177억 2,100만원)
2	안 제38조의2제1항 (자립지원 실태조사)	○	—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추가재정소요는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에서 현행 제도 하의 총재정소요를 차감하여 산출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¹⁾
-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

(2024.12. 기준, 단위: %)

구 분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2.5	2.1	2.0	2.0	2.0	2.0	2.0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,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에서 현행 제도 하의 총재정소요를 차감하여 산출
- (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) 개정안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5년간 총 11억 1,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 -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실태조사는 2026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 - 실태조사 실시 비용은 2023년 예산 2억원에 국회예산정책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
자립지원 실태조사 실시 (매년 실시)	213	218	222	227	231	1,11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(현행 제도 하의 총재정소요) 현행 제도 유지 시 5년간 총 4억 4,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 - 현행 제도 유지 시 실태조사는 2026년과 2029년에 실시
 - 실태조사 실시 비용은 2023년 예산 2억원에 국회예산정책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

[표 3] 현행 제도 하의 총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
자립지원 실태조사 실시 (3년 주기)	213	-	-	227	-	44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4. 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6억 7,100만원(연평균 1억 3,400만원)으로 추계

[표 4]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실태조사 주기 단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(A)	213	218	222	227	231	1,111	222
현행 제도 하의 총재정소요(B)	213	—	—	227	—	440	88
합 계(A-B)	—	218	222	—	231	671	134

주: 1. 2026년과 2029년은 현행법에 따라 2023년에 이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해로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
2.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개정안의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강시온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시온	02-6788-4742	sionkang@assembly.go.kr